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98

발의연월일: 2021. 8. 24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고용진 · 이병훈

오영환 · 한준호 · 서영교

이규민 • 윤준병 • 박 정

유정주 • 조오섭 • 김민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을 이 루고, 문화재와 미술품의 전시·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

그러나 국보·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·화재 등의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·내진 보강 및 화재·도난 방 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 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·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지진·재해안전관리기준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진·재해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(이하 "지진·재해안전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 하고,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
- 2.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안전에 관한 기준
- 3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지진·재해안전관리기준의 내용 및 수립·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✓신 설> 제25조의2(지진·재해안전관리기준등)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진·재해의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기준(이하 "지진·재해안전관리기준"이라한다)을 마련하고,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 1.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등 구조안전에 관한기준 2. 박물관 및 미술관의화재 및도난 방지등 안전에 관한기준 2. 박물관 및 미술관의화재 및도난 방지등 안전에 관한기준	현 행	개 정 안
3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지진・재해안전관리기준의		제25조의2(지진·재해안전관리기 준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진·재해인전관 리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 전에 관한 기준 2.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안전에 관한 기준 조 3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

<u>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</u> <u>다.</u>